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해 12월 28일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기계설비공사업 업역 확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비용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업역확대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사업분야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지열냉난방설치공사, 자동제어 분야에서 전기·통신과 업역다툼이 있었던 자동원격검침 설비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업역에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난 해 건산법 개정 시 기계설비만 겸업제한 폐지를 4년 유예시킨 성과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비용 정산을 민간공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의하여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회원사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1. 건설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기계설비공사업 업역 확대(제7조 관련 별표1)

- 기계설비공사업의 업역에 “시스템에어컨(GHP, 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전자파차단 설비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점검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를 추가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비용 정산(26조의2)

- 발주자가 지급한 보험료가 낙찰과정에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료가 낙찰률과 무관하게 하도급자에게 전달토록 제도를 개선
* 정산제도가 공공 및 민간공사에도 도입되어 보험료를 확보한 것으로 우리협회가 끊임없이 건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이다.

□ 하도급공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제26조 제2항 신설)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

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하도급공사의 경우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불공정 하도급을 확인하기 곤란한 문제를 시정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확대(제83조)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를 국가 등 공공성 시행자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기존의 10억 이상, 300호 이상에서 5억원 이상인 공사,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 및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 건설공사로 확대함

□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부칙 제10조)

- 건설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란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으로 겸업제한 폐지를 4년간 유예(2012년 시행)●

2. 건설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_____.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_____ _____ _____

현 행	개 정 령 (안)
<p>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u>10억원</u> 이상인 공사 <u><신 설></u></p> <p>3.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u>300호</u>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p> <p>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u>10억원</u> 이상인 공사 <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생 략)</p> <p>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나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u><신 설></u></p> <p>④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5억원</p> <p><u>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u></p> <p>3.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200호</p> <p>4.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5억원</p> <p><u>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u></p> <p><u>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u></p> <p><u>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_____</p> <p>_____. <후단 삭제></p> <p><u>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u></p> <p>⑥ (현행 제4항과 같음)</p>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 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 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고사
성어

宋襄之仁(송나라 송, 도을 양, 갈 지, 어질 인)

송나라 양공(襄公)의 인정이란 뜻으로 ① 쓸데없는 인정을 베푸는 것 ② 무익한 동정이나 배려를 비유한 말

춘추시대인 주나라 양왕(襄王) 2년(B.C.650)에 송나라 환공(桓公)이 세상을 떠났다.

환공이 병석에 있을 때 태자인 자부는 인덕(仁德)있는 서형(庶兄) 목이(目夷)에게 태자의 자리를 양보하려 했으나 목이는 굳이 사양했다. 그래서 자부가 위(位)에 올라 양공이라 일컫고 목이를 재상에 임명했다.

그로부터 7년 후, 춘추의 첫 패자인 제나라 환공(桓公)이 죽고, 송나라에는 운석이 떨어졌다. 이는 패자가 될 징조라며 양공은 야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여섯 공자간에 후계 다툼이 치열한 제나라로 쳐들어가 공자 소를 세워 추중세력을 만들었다. 이어 4년 후에는 송·제·초 세 나라의 맹주가 되었다. 목이는 '작은 나라가 패권을 다투는 것은 화근'이라며 걱정했다.

이듬해 여름, 양공은 자기를 무시하고 초나라와 통교한

정나라를 쳤다. 그러자 그 해 가을, 초나라는 정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대군을 파병했다. 양공은 초나라 군사를 홍수(泓水: 하남성 내)에서 맞아 싸우기로 했으나 전군이 강을 다 건너왔는데도 공격을 하지 않았다. 목이가 참다못해 진언했다.

“적은 많고 아군은 적사오니 적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쳐야 하옵니다.”

그러나 양공은 듣지 않았다.

“군자는 어떤 경우든 남의 약점을 노리는 비겁한 짓은 하지 않는 법이오.”

양공은 초나라 군사가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야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열세한 송나라 군사는 참패했다. 그리고 양공 자신도 허벅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이 악화하는 바람에 결국 이듬해 죽고 말았다.